

제303회 시의회 정례회
기획경제위원회

I·SEOUL·U
너와 나의 서울

서울산업진흥원

정 관 변 경 보 고

2021. 11. 24.


Seoul Business Agency

재단
법인 서울산업진흥원

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

개요

- 관련근거: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3

제55조의3(조례상보고 등) 시장 및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

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

○ 변경 사유

- 상임이사 선임에 따른 대표이사 직무대행 수행 관련 규정 정비

○ 변경 내용

- 대표이사 공석 시 상임이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 순서 명확화

현 행	개정 (안)
<p>제13조(임원의 직무)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,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<u>상임이사</u>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상임이사까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의 당연직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~⑥ 생략</p>	<p>제13조(임원의 직무)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,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<u>직제 및 정원규정의 상임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</u>, 상임이사까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의 당연직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~⑥ 현행과 동일</p>

향후 추진계획

- 서울시장 승인: '21. 11월
-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허가: '21. 11월

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(안)

서울산업진흥원 정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 2 장 임원 및 직원

제13조(임원의 직무)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,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직제 및 정원규정의 상임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상임이사까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의 당연직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직제 및 정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.

④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

⑤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.

⑥삭제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13조(임원의 직무)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,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<u>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</u>, 상임이사까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의 당연직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~⑥ 생략</p>	<p>제13조(임원의 직무)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,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<u>직제 및 정원규정의 상임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</u>, 상임이사까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의 당연직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~⑥ 현행과 동일</p>